

대구공업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18년 6월 14일
의원정수 : 11명	재적의원 : 11명
참석의원 : 10명	불참의원 : 1명

1. 회의일시 :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00분

2. 회의장소 : 대구공업대학교 1호관 세미나실

3. 참석의원 : 의장 박경숙	부의장 김용경
의원 윤동화	의원 손병훈
의원 이규태	의원 김한상
의원 이권택	의원 이양우
의원 김대진	의원 윤태승

4. 불참의원 : 우종길

5. 회의 안건

- 가.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
- 나. 학칙 개정(안) 심의

6. 회의 내용

박경숙 의장이 이날 오후 3시에 의원 10명이 모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가.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 건

박경숙 의장이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의 신설(2017.11.28.) 및 시행(2018.05.29.)에 따라 대구공업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신구대조문, 개정 전문을 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심의케 한 후, 내용 상의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에 대하여 요청하니

손병훈 의원이 현재 우리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에 의하여 잘 구성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의 신설조항에 따라 회의개최 및 회의록의 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임으로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원		의원		의원	
----	--	----	--	----	--

이에 이양우 의원이 회의록 공개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묻자, 대학경영지원처 담당과장이 현재 지식정보원에 요청하여 대학홈페이지-대학소개-예결산공고란에 게시판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며, 참고로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게 됨을 답변하다

이규태 의원이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이며, 내용에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함

이에 김한상 의원이 동의하고, 김대진 의원이 재청함으로, 박경숙 의장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자, 전체 의원이 찬성함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을 가결하다

나. 학칙 개정(안) 심의의 건

박경숙 의장이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원격수업 시행, 등록금심의위원회 내부규정 마련 등으로 인한 학칙의 개정 심의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안건을 상정하여, 학사운영처 담당과장의 설명을 요청하니

학사운영처 담당과장이 학칙 개정 신구대조문 및 개정학칙을 배포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모집계획의 수립, 보고에 따라 2019학년도 설치학과/계열의 입학정원이 조정되었으며,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원격수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학칙에 명시하기 위하여 학칙 제25조(수업)의 개정과 제25조의3(원격수업)를 신설하였으며, 학칙 제19장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학칙에 상세한 내용의 명기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어 학칙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함을 설명하다

박경숙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묻자, 이규태 의원이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내용들이 상위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묻자, 학사운영처 담당과장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재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자료 등을 참조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다

이권택 의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칙에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칙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상관없는지 묻자, 학사운영처 담당과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사항은 학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칙에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를 하고, 별도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여도 큰 문제가 없음을 총무부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학칙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것을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다

김용경 의원이 전반적으로 학칙 개정의 내용이 이미 공론화되어 논의가 된 사항이며, 학칙 변경과 관련하여 공시기간 중에 의의 제기나 기타 의견이 제시된 것이 있는지 묻자, 학사운영처 담당과장은 공시기간을 준수하였으며, 동안 이의 제기

의원	이규태	의원	김용경	의원	이경숙
----	-----	----	-----	----	-----

나 기타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음을 설명하다

이에 손병훈 의원이 학칙 개정 절차나 내용 상의 큰 하자가 없으므로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완료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표하자, 이규태 의원이 동의하고, 이양우 의원이 재청함으로, 박경숙 의장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자, 전체 의원이 찬성함으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다.

7. 간서명 대표자 선출

박경숙 의장이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추천을 의뢰하니 이양우 의원이 의장, 부의장, 이규태 의원을 간서명 대표자로 선임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권택 의원의 동의와 김대진 의원의 재청으로 3명을 간서명자로 선임하다.

이상의 안건을 의결한 후, 위원장이 동일 오후 3시 4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다.

2018년 6월 19일

대구공업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박경숙	부의장 김용
의원 윤동화	의원 이규태
의원 손병훈	의원 이권택
의원 김한상	의원 이양우
의원 김대진	의원 윤태승

의원	의원	의원	의원
----	----	----	----